

| 제정일 | 개정일 | 개정차수 | 분류번호 | 총페이지 |
|--------------|------------|------|----------|------|
| 2007. 04. 11 | 2026.04.01 | 7 | TK-A-102 | 9 |

이사회 규정

ESG지원팀

2026.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이사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순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의장직무를 타 대표이사를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 비상근이사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모사전송기(FAX) 또는 E-mail 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12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⑥ 상법 제386조제1항(이사의 결원), 제390조(이사회 소집),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 및 제392조(이사회 연기 및 속행)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 선임독립이사

- ① 이사회는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이사(이하 “선임독립이사”라고 한다)를 독립이사들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② 선임독립이사의 임기는 해당 독립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
- ③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 소집 및 주재
 - 2.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 3. 회사는 선임독립이사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독립이사회

- ① 이사회 내에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를 둔다.
- ② 독립이사회는 선임독립이사가 주재한다.

제14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 간사

이사회에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8조 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또는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 주식배당 결정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 이사의 보수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직위의 보·면
- (4)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및 폐지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다. 기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모집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10)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차입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라.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대한 사항

4.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경업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대표이사(또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7.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그 내용